

## 경운대학교 국내대학과의학생교류수학및학점인증에관한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경운대학교(이하“본교”)와 국내 타 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와 국내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교류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대학이라 함은 학생이 입학하여 재적 중인 대학을 말한다.
2. 수학대학이라 함은 학생이 수학을 지원한 대학을 말한다.

제4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장 본교 학생의 타 대학 수학

제5조(지원자격) 학점교류 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1학년이상 수료한 학생으로 한다. 단, 편입생은 본교에서 1개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한다.
- ②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이어야 한다.
- ③ 기 이수한 학기의 누계 취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단, 총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6조(수학신청) ① 지원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다음의 지원서류를 소속학과(부)장을 경유 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1. 학점교류수강신청서(별지 1호 서식)
- ② 수학 신청자는 한 학기에 1개 대학내에서 수학신청 하여야 한다.

제7조(수학허가) 수학허가는 소속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결정한다.

제8조(등록) 정규학기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계절학기는 수학대학교에 등록금(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교과목의 이수) ① 이수 교과목은 본교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교 교육과정에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타 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다.

③ 수학대학교에서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수학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수강신청)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수학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1조(수학신청의 취소) ① 수학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수업주수 3분의 1선 이내에 수학신청 취소원을 본교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학신청 취소 절차는 이 규정 제6조 제1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③ 계절수업의 경우는 수학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2조(학점인정) 타 대학에서 수학 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본교 학점으로 인정한다.

① 성적은 수학대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수학대학교의 담당교수가 평가한다.

② 타 대학에서 수학 취득한 학점은 인정(Satisfactory(S), 미인정 Unsatisfactory(U)으로 인정한다.

③ 타 대학교에서 취득한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단, 교양 및 전공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3호, 별지서식4호에 따라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로 제출 하여야 한다.

제13조(취득학점) 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본교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18학점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계절학기는 6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수학기간) 학점교류의 수학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매 학기 단위로 하되, 총 수학학기가 2개 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계절학기는 학기당 6학점이내, 졸업시까지 21학점(편입생은 12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수학기간은 소속대학교의 수업연한에 산입한다. 단, 계절학기는 제외한다.

③ 수학기간 중에는 소속대학교의 승인 없이 자의로 수강을 포기하거나 휴학 할 수 없다.

④ 수학기간 중에는 반드시 승인된 대학교에서 수학하여야 하며, 수학대학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성적평가)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되, 평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시설사용료) 수학대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수학대학교에서 정한다.

### 제3장 타 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

제17조(지원자격) 본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대학 총장의 수학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18조(수학신청) 소속대학 총장은 학점교류 추천자 명단을 본교 총장에게 통보한다.

제19조(수학허가) 본교 총장은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지원자의 수학허가 여부를 확정하고 학기 개시(계절수업 개강) 2주 전까지 소속대학 총장에게 통보한다.

제20조(정원) 정규학기 수학 학생의 정원은 당해 학과(부)정원의 10분의 1 이내로 하며 계절수업은 정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등록금 및 수강료 등) ① 정규학기 수학학생은 수학기간 중 소속대학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계절학기는 본교에 등록금(수강료)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수강신청)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에게 본교에서 임시 학번을 부여하고,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본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3조(수학신청의 취소) 수학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속대학에 수학신청 취소원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수학허가의 취소)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수학기간 중 본교의 학칙을 위반한 때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취득학점) 타 대학교 학생이 본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소속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계절학기는 6학점 이내로 한다.

제26조(성적) ① 성적은 본교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본교의 담당교수가 평가한다.

② 타 대학교의 학생이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은 수학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속대학교에 통보한다.

③ 타 대학 학생이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은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7조(신분증의 발급) 수학이 허가된 학생에게는 교류학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8조(시설물의 이용) 수학이 허가된 학생은 도서관, 실험실습실, 기숙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3호 서식]

## 교류대학 학점취득 인정 확인서

소 속	대학		학과	학년
성 명	학 번			

수학 대학명	인정학기		학년도	학기
수 학 기 간	총인정학점		학점	

교류대학 취득 내용			본 대학교 인정 내용					
수학대학 과목명 (영문으로표기)	학 점	등급 (실점)	이수구 분	교과코드	교과목명	학 점	실 점	개설 전공
계								

상기 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위와 같이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학부(과)장 (인)

\* 첨부 : 수학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1부.

1. 수학대학 과목명에는 수학대학에서 받아온 성적표의 과목명을 그대로 적으십시오.
2. 본교 대체과목이 없을시에는 공란으로 비워 놓으십시오. 단, 본교 대체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 과목명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고, 대체과목은 한 과목당 본교 한 과목으로 인정 됩니다. 대체과목의 학점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본교에서 개설된 학점만큼 인정 됩니다.
3. 대체과목이 존재할 경우 교양 또는 전공으로 인정되며, 나머지는 일반선택으로 인정 됩니다.
4. 총 인정학점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별지 4호 서식]

## 교류대학 학점인정 심사 의견서

소 속	대학	학과(전공)	
학 번		성 명	

교류대학 취득 교과목 및 내용	본 대학교 인정 교과목 및 내용	인정 사유(의견)
교과목명 : 내 용 :	교과목명 : 내 용 :	
교과목명 : 내 용 :	교과목명 : 내 용 :	
교과목명 : 내 용 :	교과목명 : 내 용 :	
교과목명 : 내 용 :	교과목명 : 내 용 :	
교과목명 : 내 용 :	교과목명 : 내 용 :	

※ 교양과목일 경우 기초교양학부장의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교류대학 학점인정 심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담당교수 : (인)

학부(과)장 : (인)

경운대학교 총장 귀하